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류, 호 및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를 구성하는 품목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 단위), 호(4 단위) 및 소호(6 단위)를 말한다.
- 나. **분류된**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생산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 다. **탁송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생산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생산품을 말한다.
- 라.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마.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생산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해야 한다.
- 바. **대체가능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순히 시각적인 겸사만으로는 구별하기 불가능한 재료를 말한다.

- 사. **상품**이란 재료, 생산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 아. **제조**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 자. **재료**란 생산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품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 차. **생산품**이란 그 생산품이 추후 다른 제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인 더라도 제조되고 있는 생산품을 말한다.
- 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 타.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적용된 카호에 정의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제 3.2 조 원산지 생산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생산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생산품으로 여겨진다.

- 가. 제 3.4 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생산품
- 나.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생산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 3.5 조의 의미 내에서 관련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획득된 생산품

제 3.3 조 원산지 누적

제 3.2 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한쪽 당사국에서 생산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생산품은 그 한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여겨진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 3.6 조에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제 3.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생산품

1. 제 3.2 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생산품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수생식물을 포함한 식물, 식물성 생산품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의 생산품

마. 1) 당사국의 영토 내 수렵, 뒷사냥,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생산품

2) 당사국의 영역에서 알, 유생동물, 치어 또는 작은 물고기로부터 길러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양식 생산

품

바.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

사. 바호에 언급된 생산품으로만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생산품

아. 당사국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또는 하충토에서 추출된 생산품. 다만, 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충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차.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카. 이 항에 언급된 생산품으로만 당사국에서 제조된 생산품

2. 제 1 항바호 및 사호의 “당사국의 선박”과 “당사국의 가공선박”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등록된 것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적어도 50 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하여 소유되는 경우

-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있는 회사, 그리고
- 나) 어느 한쪽 당사국, 어느 한쪽 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적어도 50 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제 3.5 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생산품

1. 제 3.2 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생산품은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생산품이 되어, 그 생산품이 다른 생산품의 후속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생산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 나.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생산품이 되어, 그 생산품이 다른 생산품의 후속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생산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2. 부속서 3-가에 명시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 라 한다)은 다음의 공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 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RVC = \frac{\text{공장도 가격} - \text{비원산지 재료가치(VNM)}}{\text{공장도 가격}} \times 100$$

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text{공장도 가격}}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현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직접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그리고

직접 경비는 총간접비용이다.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생산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여겨진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것 외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생산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생산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생산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생산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는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조건으로 적용

된다.

제 3.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¹

1. 제 2 항과 무관하게, 다음의 공정은 제 3.5 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생산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여겨진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생산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다. 세탁, 세척, 먼지 · 녹 · 기름 ·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성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¹ 이 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문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문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문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로의 단순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생산품 또는 생산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너. 동물의 도살, 또는
- 더. 가호부터 너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생산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 1 항의 의미 내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생산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 3.7 조 자격 단위

- 1.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생산품이다. 따라서
 -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생산품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전체가 자격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 나. 탁송물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여러 개의 동일한 생산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생산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5에 따라 포장이 품목분류의 목적상 생산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은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포함되고 그 생산품이 원산지 생산품인 경우 원산지 생산품으로 여겨진다.

제 3.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않고 생산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생산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제 3.9 조

상품의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3에 정의된 세트는 모든 구성 생산품이 원산지 생산품이고 그 세트와 그 생산품 모두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생산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생산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생산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 페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생산품으로 간주된다.

제 3.10 조

중립재

생산품이 원산지 생산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생산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생산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다. 기계, 도구, 형판 및 주형, 그리고

라. 그 생산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1 조

재료 구분 회계

1. 대체 가능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2. 생산품의 제조에 사용된 대체 가능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생산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 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건에 따라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 당국은 승인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12 조

영역 원칙

1. 제 3.3 조와 이 조의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3.2 조부터 제 3.11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 3.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그 상품은 비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져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3. 이 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이후 수출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재료가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 제3.6조에 언급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어야 한다. 그리고

나. 다음 사항이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1) 재수입되는 생산품이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그리고

2) 이 조를 적용함으로써 수출 당사국 밖에서 획득된 총부가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3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총부가가치”는 수출 당사국 밖에서 결합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5. 제3항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 생산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생산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수출 당사국 밖에서 이루어진 종류의 모든 작업 또는 가공은 적용 가능한 경우, 역외 가공 통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13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생산품에만 적용된다. 다만, 생산품은 하역, 재선적, 탁송화물 또는 화물의 분리, 보관, 또는 그 생산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한,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그 생산품은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떠나거나 한다.

2. 제 1 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가. 제 3 국에서의 원산지 생산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

다. 경유국의 관세 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또는 서류

- 1) 생산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생산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그 밖의 운송수단을 기재한 것, 그리고
 - 3) 생산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또는
- 라.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 4 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규정된 관세 위원회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의 입증 서류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두주

1.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2.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3.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기재된 경우, 그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5. 일부의 경우, 제 1 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하면, 이는 제 3 열의 규정이 제 2 열에 기술된 그 호 또는 류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이 부속서 제 3 열의 목적상,
 - 가. 완전생산기준(WO)이란 생산품이 제 3.4 조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말한다.
 - 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 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 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라.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마.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란 제3.5조에 따른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말한다.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완전생산기준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완전생산기준
제3류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완전생산기준
ex 제4류 0402 0403	<p>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p> <p>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p> <p>요구르트, 버터밀크 ·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 케페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 · 과실 · 견과류 ·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완전생산기준</p> <p>2단위 세번변경기준</p> <p>2단위 세번변경기준</p>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 ·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완전생산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 · 뿌리 · 괴경(塊莖)	완전생산기준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 멜론의 껍질	완전생산기준
ex 제9류 0901 0902 0910.91	<p>커피 · 차 · 마테(maté) · 향신료. 다음을 제외함.</p> <p>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p> <p>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p> <p>--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p>	<p>완전생산기준</p> <p>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제조</p> <p>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된 제조</p> <p>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제조</p>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0류	곡물	완전생산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완전생산기준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완전생산기준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15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1701.91 1701.99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40페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ex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1901.10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ex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2003.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1	-- 죽순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8.19	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1류 2106.90	각종 조제 식료품. 다음을 제외함.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2류 2201 2202.99 2204 2208	음료 · 주류 · 식초. 다음을 제외함.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 기타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완전생산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완전생산기준 1. 소주: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 · 리큐르(liqueur) 와 그 밖의 주정음료	2. 그 밖의 상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제조 과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블렌딩, 여과 및 그 밖의 후속 공정
ex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waste)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렛(pellet) 모 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	사료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 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 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다음 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 석회 · 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 [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 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 바닷물	완전생산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4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	화강암 · 반암(斑巖) · 현무암 · 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6류	광(鑛) · 슬래그(slag) · 희(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7류	광물성 연료 · 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종류물, 역청(瀝青)물질, 광물성 왁스.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p>주: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할 경우 화학반응의 생산품인 제 27 류 상품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은 문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문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문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이다.</p> <p>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p> <p>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p>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p>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p> <p>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또는</p> <p>나. 감압증류법: 대기압보다 낮으나 분자증류법으로 분류될 정도로 낮지는 않은 압력에서의 증류</p>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271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그러한 변경으로 인한 상품이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생산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9류	유기화학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0류	의료용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4	의약품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 제3005호 ·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1류	비료.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 인 ·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2류	유연용 ·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 · 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 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 · 제3204호 ·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4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 · 조제 윤활제 · 인조 왁스 · 조제 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 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 (paste)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 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6.10	- 로진(rosin)과 수지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3807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 (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 품[로진(rosin) · 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 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완전생산기준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4602.1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602.12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펠프, 회수한 종이 · 판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펠프 · 종이 · 판지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9류	인쇄서적 · 신문 · 회화 ·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 · 타자문서 · 도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50류	견.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5004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	견사 ·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1류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1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ex 제52류	면. 다음을 제외함.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204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212	그 밖의 면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	아마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勒皮)섬유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4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	아마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勒皮)섬유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ex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402호, 제5404호의 것은 제외한다)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 제5503호, 소호 제5505.10호, 제5506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 제5503호, 소호 제5505.10호, 제5506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10	재생 · 반(半) 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 제5503호, 소호 제5505.10호, 제5506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 제5503호, 소호 제5505.10호, 제5506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 소호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	재생 · 반(半) 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56류	워딩(wadding) · 웨트(felt) ·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맷줄(cordage) · 로프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6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7류	조제 깃털 · 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68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6802.23 -- 화강암 6802.29 -- 그 밖의 돌 6802.93 -- 화강암 6802.99 -- 그 밖의 돌 6803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6815.91 -- 마그네사이트, 페리클레이스(periclase) 형태의 마그네시아 · 백운석[돌라임(dolime)]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681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69류	도자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71류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웬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웬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웬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웬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4	합성 ·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웬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웬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6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2류	철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5	알루미늄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알루미늄의 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8류	납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 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1.40	– 원자로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4.90	- 부분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91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1.99	-- 기타	40페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1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13.91	-- 펌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13.92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1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1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1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17.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8.91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1	-- 실린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9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3.9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 [스 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원치 (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 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 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 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 레페리(teleferic)]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 (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 (leveller)·스크레이퍼(scrapers)·메커니컬셔 블(mechanical shovel)·엑스커베이터 (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 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 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 용·콤팩팅(compactating)용·채굴용·천공용 기 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 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91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8.90	- 부분품	40페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39.91	-- 섬유소 펠프 제조용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39.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40.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4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42.40	- 위의 기계류 · 장치 · 장비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42.50	-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이인 ·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ex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 · 복 사기 ·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3.91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4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직준비기계, 방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 [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과 부속품[예: 스픈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풀·셔틀·종광(heald)·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9	벨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와 모자 제조용 형(型)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 채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蘼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채봉기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 그 밖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 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와 워터제트 절단기	40페센트 이상일 것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싱글스테이션)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 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공 · 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deburring) · 샤프닝(sharpening) · 그라인딩(grinding) · 호닝(honing) · 래핑(lapping) · 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 · 쇼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또는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 형(型) 단조용(압연기는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페침용 · 전단용 · 편침용 · 낫침(notching)용 · 니블링(nibbling)용[드로우벤치(draw-benches)를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 · 슬리팅(slitting) 설비 ·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를 포함한다] 와 그 외의 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단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셔멘트(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 · 도자기 · 콘크리트 · 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 고무 · 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 ·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1	-- 체인톱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2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 회계기 · 우편요금계기 · 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 · 스텐실(stencil)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자동지불기 · 주화분류기 ·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 · 연필깎이 · 천공기 · 지철기(stapl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73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 · 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7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7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7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77.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8.90	- 부분품	40페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79.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 · 금속탄화물 · 유리 · 광물성 물질 · 고무 ·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8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82.91	-- 볼 · 니들 · 롤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8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83.90	날이 붙은 훨,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5.90	나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3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0페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50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507.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508.7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509.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510.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51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851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투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3	디스크 · 테이프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 음성기록기기 ·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 디지털 카메라 · 비디오 카메라레코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 ·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 원격조절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 · 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4	인쇄회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 · 퓨즈 · 피뢰기 · 전압제한기 · 서지(surge) 억제기 · 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 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와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8535호 · 제8536호 · 제8537호의 기기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9.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91	-- 음극선관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 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 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 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 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 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8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9	전기 · 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 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부속 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페센트 이상일 것
ex 제90류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 품과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프리즘 · 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0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04	시력교정용 · 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 ·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05.9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06.91	-- 카메라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07.91	-- 촬영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7.92	-- 영사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8.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0.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1.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2.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3.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4.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5.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6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0페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17.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18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 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 ·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2.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3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 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4.90	- 부분품과 부속품	40페센트 이상일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5.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7.90	- 마이크로톰(microtome) 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8.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29.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9031.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페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32.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80	- 그 밖의 케이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2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93류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4류	가구, 침구 · 매트리스 · 매트리스 서포트 (mattress support) ·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 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6.10	– 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95류	완구 · 게임용구 ·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6류	잡품. 다음을 제외함. -- 체인스庫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7.11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9620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97류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소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전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소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소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확인한다. 소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투입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